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9. 2. 강명숙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9. 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9. 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종선 의원

가. 제안이유

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안 제5조)

4)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, 지위향상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~ 안 제7조)

5)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 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라 우리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**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**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.

- **안 제6조**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,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, 관련 조사·연구 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
- **안 제7조 및 제8조**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및 폭언·폭행 및 성희롱 등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○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됨.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

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.

-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,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